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4.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 6.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